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변경의 가계답변에 대한 영향*

신 인 석** · 한 민***

초 록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표에 형태상의 변경이 있었다. '기타 소비지출' 범주에서 조사항목의 내용은 동일하되 조사항목을 제시하는 형식을 다르게 한 변화였다. 본 논문은 이 조사표 변경 후 실시된 조사에서 '기타 소비지출' 금액이 조사표 변경 이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조사결과 변동은 소득이 높은 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고, 가구주 연령, 학력 및 가구원수 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발견된 현상을 경제주체의 휴리스틱(heuristic) 정보처리, 특히 '제한된 주의력' 또는 '현저성'이 적용된 사례라는 해석을 제안하였다.

핵심주제어 :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지출, 제한된 주의력, 현저성

JEL : D1, D9, E2

I. 서 론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부채와 지출행위에 대한 유일한 미시자료이다. 2012년부터 통계청에 의해 수집 관리되고 있는데, 2017년 조사표에 형태상의 변화가 있었다. 이후 실시된 조사결과에서 조사표 변화 이전 대비 큰 변동이 있었다. 이 논문은 이 2017년의 조사표 변경과 이후 조사결과의 변동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2016년까지 가계에 제시된 설문 조사표는 가구의 소비지출을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가구는

* 세심한 의견으로 논문의 개선에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e-mail: ishin@cau.ac.kr

*** (주저자)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차장, e-mail: zll77@bok.or.kr

·논문 투고일: 2021년 4월 6일 ·수정일: 2021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9일

각 항목별 소비지출을 기입하도록 요청받았는데, 각 항목마다 한 줄이 넘지 않는 간단한 설명이 참고내용으로 첨부되어 있었다. ‘기타 소비지출’의 경우 “의류·신발,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등 앞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이라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2017년 조사표에서는 ‘기타 소비지출’의 제시방식이 변경된다. 한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던 ‘기타 소비지출’에 ‘의류·신발’,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그 외 소비지출’ 등 4개의 하위 항목을 두는 방식으로의 변경이었다. 명백히 조사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된 가운데, 조사표 형태만의 변경이었다. 간단한 변화였지만 2017년 새로운 조사표는 조사결과에 큰 변동을 가져왔다. ‘기타 소비지출’을 제외한 일반 소비지출은 2012~16년 평균 대비 실질가치 기준으로 2017년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조사표 형태가 달라진 ‘기타 소비지출’은 무려 5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연구목적은 2017년 조사표 변경으로 그 이전과 이후 「가금복」 자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이 있었음을 학계와 기타 전문가 집단에 보고하는 데 있다. ‘기타 소비지출’은 「가금복」 표본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20% 내외를 차지하는 작지 않은 소비지출 항목이다. 2017년의 조사표 변경에 따른 급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목되고 있는 새로운 거시현상의 하나는 가계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이다. 공식지표로서의 평균소비성향은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의해 산출되어왔는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가금복」 자료에 의해 산출된 평균소비성향은 2017년 조사표 변경 이후 상승으로 반전한다. 두 자료 사이에 나타난 차이는 2017년 조사표 변경 이후 ‘기타 소비지출’ 항목에 발생한 「가금복」 자료의 이례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¹⁾

단순해 보이는 조사표 변경이 유의한 가계답변의 변동을 초래하였음을 전제로 하면, 다음으로는 이 현상을 경제이론상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이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결론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다만, 가계답변 변동이 가계의 특성변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추가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잠정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2차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사표 변경 이전 2012~2016년의 패널표본에 기반하여 표본가구들의 소비관계식을 추정하였다. 소비관계식은 표준적인 생애주기모형(life-cycle model)에 기초한 일반적인 계량모형이다. 추정된 소비관계식에 의해 2017년의 ‘기타지출’ 예측치를 도출한 뒤, 실제 2017년 조사에 의한 ‘기타지

1) 이에 대해서는 본문의 II장 3절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2012년 이후 평균소비성향의 지속적인 하락현상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김대용·서정원(2020)이 있다.

출' 실제치와의 차이를 '조사표 변경이 가져온 변동'으로 간주하였다. 이 변동이 가계의 특성변수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표 변경이 가져온 변동은 가계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가구원 수 등과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결과에 대한 가설적 해석으로서 '제한된 주의력(limited attention)' 또는 '부주의(inattention)'를 제안하였다.

이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2017년 「가금복」 조사표의 '기타 소비지출' 관련 변경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가계답변의 변동을 보여주는 기술적 통계량을 제시한다. 조사표 변경 이후 가계가 답변한 기타 소비지출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인다. III장에서는 생애주기모형에 기초한 소비관계식 추정에 의해 조사표 변경이 가져온 답변변동을 회귀분석한다. 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논의하고, V장에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변경과 가계답변 변화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요²⁾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위기 우려가 증증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구 단위의 자산 및 부채 관련 미시통계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시작되었다. 논의의 결과 2010년에 기존 「가계자산조사」(통계청)와 「가계신용조사」(금융감독원), 「한은패널조사」(한국은행) 등 3개 기관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가계조사가 「가계금융조사」로 통합되어 1년 주기의 연간패널조사로 실시되었다. 이어 복지관련 정책추진을 위해 가계생활 수준의 정도 및 변화요인 등에 대한 기초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2년 조사내용이 확대되었다. 확대된 조사는 크게 금융과 복지부문의 두 범주로 구분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명칭도 변경되었다. 현재 통계청이 주관기관인 국가통계이며 통계청 이외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작성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³⁾

2012년 최초 조사를 위하여 설계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은 전국에 걸쳐 추출된

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요」는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침서」를 주로 참고하였다.

3) 가금복은 통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930001호)이다.

2만 가구로 구축되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 판단과 복지관련 미시통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조사 목적에 따라 금융부문 및 복지부문에 1만 가구씩의 표본이 할당되었다. 2012년의 최초 조사는 고정표본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3년의 연간 조사 이후 2015년부터는 횡단과 종단 측면에서 표본크기와 조사 유지기간 사이의 균형, 인구주택총조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표본의 20%를 새로운 표본으로 교체하는 연동표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⁴⁾

최초 조사시기인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조사항목이나 조사표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⁵⁾ 조사표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크게는 ① 금융 및 복지부문의 ‘공통항목’, ② 금융 및 복지부문별로 조사목적에 따른 ‘개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부문의 경우 가구구성, 자산 및 자산운용, 부채 및 부채상환능력, 소득 및 경상이전지출 등의 항목을 조사하며 복지부문의 경우 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소비지출, 노후생활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가구의 소비지출 내역은 복지부문에서만 조사하여 왔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 2017년 복지부문 조사표에서 소비지출 관련 문항에 변경이 있었다.

2. 2017년 조사표 변경

「가금복」 복지부문 조사표에서 가계지출은 ‘비소비지출’, ‘주요 지출’ 등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연금·사회보험료, 이전지출 등을 말한다. ‘주요 지출’이 소비지출에 해당하는데, ‘주요 지출’은 2016년까지는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비’, ‘기타 소비지출’ 등으로 세분되어 조사되었다. 2012~2016년까지 사용된 조사표에서 23번 설문이 ‘주요 지출’을 묻는 문항이었는데, [그림 1]은 그 실제문항을 보인 것이다.

이 소비지출에 대한 문항이 2017년 [그림 2]와 같이 변경된다. 설문항 번호가 24번으로 조정되었고 그 이외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작은 변화는 2016년까지 주요 지출에서 조사되었던 ‘경조비’ 지출이 2017년 조사표에서는 삭제되었다. 2017년부터 경조비는 이전지출로 분류되어 ‘비소비지출’ 문항으로 이동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기타 소

4) 가금복 표본추출틀은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2017년까지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2018년부터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하고 있다.

5) 2012~2017년 중 조사항목 관련 변경은 ‘항목 세분화’(재산소득을 금융소득·임대소득·기타로 구분 조사 등), ‘항목명칭 변경’, ‘항목통합’(담보대출의 용도별 항목 중 결혼자금 및 의료비 마련을 기타로 통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이외 특기할 만한 조사내용이나 조사표의 변경은 없었다.

[그림 1] 2012~2016년 기간 조사표

이 그림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계소비지출 조사에서 2012~2016년 기간 사용되었던 실제 조사표를 보인 것이다.

23 2015년(1. 1.~12. 31.) 가구의 주요 지출을 연간 총액으로 써넣어 주십시오.

※ 23 비소비지출 등(20쪽)을 제외한 2015년 한해 가구에서 지출한 금액을 써넣음

항 목	참 고 내 용	금 액
1) 식료품(외식비 포함)	곡물, 빵류, 떡류, 육류, 유제품, 채소, 조미식품, 비주류 음료,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	만원
2)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상하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만원
3) 교육비(보육비 포함)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 교육 등의 서비스 등	만원
4)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 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	만원
5)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 자동차 구입은 제외	만원
6)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기), 통신 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만원
7) 경조비	결혼식·회갑연·돌 등의 축하금, 조의금 등	만원
8) 기타 소비지출	의료·신발,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 1)~7)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만원
전체 생활비(1)+...+8)		만원

24 귀댁의 1년 후(2017. 3. 31.) 소득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감소할 것이다 2)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증가할 것이다

25 귀댁의 1년 후(2017. 3. 31.) 지출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감소할 것이다 2)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증가할 것이다

[그림 2] 2017년 조사표

이 그림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계소비지출 조사에서 2017년 사용되었던 실제 조사표를 보인 것이다.

24 2016년(1. 1.~12. 31.) 가구의 주요 지출을 연간 총액으로 써넣어 주십시오.

※ 24 경상이전지출 등(20쪽)을 제외한 2016년 한해 가구원이 지출한 모든 금액을 써넣으며, 24 각종 현물소득(18~19쪽)도 합산하여 써넣음

항 목	참 고 내 용	금 액
1) 식료품(외식비 포함)	곡물, 빵류, 떡류, 육류, 유제품, 채소, 조미식품, 비주류 음료,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	만원
2)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상하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만원
3) 교육비(보육비 포함)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	만원
4)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 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	만원
5)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등 (자동차 구입비 제외)	만원
6)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기), 통신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만원
7) 기타 소비지출(①+②+③+④)	오락·문화, 의료·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숙박, 담배 등 1)~6)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만원
① 오락·문화	운동, 공연, 단체여행비, 취미용품(TV, 오디오, 컴퓨터, 사진기 등 포함) 등에 대한 지출	만원
② 의료·신발	의복, 교복, 신발 등 구입 및 수선·세탁 서비스에 대한 지출	만원
③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가구, 가전기기, 식기류 등의 가정용품 및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	만원
④ ①~③이외 소비지출	숙박, 담배, 미용서비스, 장신구, 소멸성 보험료 등 ①~③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소비지출	만원
전체 생활비(1)+...+7)		만원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입주형태(24번 항목, 6쪽)에 '1) 자기집'으로 응답하신 가구만 써넣어 주십시오.

23-1) ① 재산세, 24-2) 주거비」 등 응답금액 중 현재 살고 있는 자가주택에 대한 부분만을 따로 기재합니다.

1) 현재 거주중인 자가주택 수선비	주택·정원·담장·상하수도·난방 설비 등의 수선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단, 주거면적 확장, 형태변경 등 주택가치 상승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제외)	만원
2) 현재 거주중인 자가주택 재산세	현재 거주중인 자가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만원

비지출' 항목의 제시방식이다. 2012~2016년 조사표에서는 기타 소비지출 항목이 별도의 하위 항목 없이 기타 소비지출의 '예'가 무엇인지 열거되지만 하였다. 그러나 2017년 조사표부터는 이전 조사표에서 기타소비지출의 예로 열거되었던 ① 오락·문화 ② 의류·신발 ③ 가정용품·가사서비스 ④ 그 외 소비지출 항목이 기타 소비지출의 하위조사 항목으로 신규 추가되었고 이 네 항목의 합계 금액이 기타 소비지출 금액으로 계상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즉 이전 조사표와 비교하여 보면 조사 내용상의 실질적 차이는 없는 가운데 조사표의 시각적 형태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 '경조비'는 명시적인 세부항목에서 누락 되어 '이전지출' 항목에서 참고내용으로 열거되는 것으로 시각적 주목도가 약화되었다.⁷⁾ 반면 기타 소비지출의 세부 항목들은 시각적 주목도가 강화되었다.⁸⁾

3. 조사표 변경 후 가계답변 변화

(1) 분석대상 표본

본 논문은 소비와 지출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복지부문 조사대상 1만 가구중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매년 응답을 하여 온 동일 가구를 분석대상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가금복」의 경우 조사대상가구에 임의로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개별 가구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이 점을 활용하면 2012년부터

- 6) 2017년 조사표의 기타 소비지출에 대한 참고내용과 이전 조사표의 참고내용은 뒷부분인 숙박, 담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항목을 기타 지출의 참고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다.
7) 2017년 조사표에서 '경조금'은 다음과 같이 보여진다.

③ 가구간 이전지출(부모, 자녀 등)	☐ 억 만원	☐ 억 만원	☐ 억 만원	☐ 억 만원
④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 억 만원	☐ 억 만원	☐ 억 만원	☐ 억 만원

※ ㉠ 세금 ○ 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연말정산 공제 후 금액) * 양도소득세, 취득세, 법인세 등 부정기적인 세금 제외
 ○ 재산세: 토지와 주택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 포함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 기타: 주민세, 종로·식당 등 소지료가 등록면허세 등
 ※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 기타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립연금), 병정우체국연금 기여금
 ※ ㉢ 가구간 이전지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 자녀나 친지, 동료 등에게 보낸 생활보조금·경조금 등
 ※ ㉣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노조비, 헌묵회비 등

- 8) 익명의 심자사가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의 개입이 있다면 조사표 변경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사는 인터넷 조사와 면접조사가 있다. 인터넷 조사시에는 답변자들이 지침서 등을 활용하여 주로 혼자 작성하므로 면접원의 역할은 없다. 면접조사는 면접조사원이 가구와 함께 작성한다. 다만 면접조사사의 경우라도 개인의 자산이나 부채에 관한 사항이 민감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같은 어조의 질문 등을 강조하는 등 면접원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기초자료의 활용에 대한 조언을 주거나 작성자료에 대한 누락여부, 자료간의 상충 여부 등에 대해 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지침서상에 파악된다. 따라서 조사는 피조사가가 조사표를 읽고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며, 면접원이 추가로 제시하는 조사표 이외의 정보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2017년까지 6년간 조사에 포함된 가구들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들 가구들로 구성된 패널표본의 구축도 가능하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가금복의 표본추출은 2015년부터 연동패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2012년에 처음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만 가구들은 2015년 이후부터는 1/5씩 순차적으로 교체되어 왔는데, 2012~2017년 기간 동안 매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를 추적하여 모두 3,033가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 3,033가구에 대한 2012~2017년 「가금복」 조사결과가 이 논문의 분석대상 표본이다.⁹⁾

구체적으로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가금복」의 ‘주요지출’ 조사에 의한 가구별 소비지출 변수, 가처분소득 변수,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 등이다. 모든 변수는 「가금복」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단, 2016년까지는 소비지출에 포함되었던 경조비가 2017년 조사부터 이전지출로 재분류되어 비소비지출로 이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료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2012~2016년 소비지출에서도 경조비를 제외하였다. 또 경조비로 비소비지출이 변동된 만큼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의 계산도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 변수는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다.¹⁰⁾

[표 1]은 표본가구 3,033개의 연령, 가구원수, 소득 및 소비지출 등에 대한 기본 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2012년 기준 가구주 평균연령은 52.6세, 평균가구원수는 2.8명 수준이었다. 표본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은 2012년 기준 평균 3,369.7만원이었다. 매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17년 3,922.8만원을 기록하여 표본기간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소비지출의 추이는 대조적이다. 표본가구의 평균 실질소비지출은 2012~2016년 기간에는 소득과는 달리 정체된 움직임을 보였고, 2012년 2,186.6만원에서 2016년 2,122.3만원으로 완만하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7년 조사에서는 평균 실질소비지출액이 11.2%의 증가율로 급등하여 2,359.2만원을 기록하였다. 2012~2017년 전체 기간의 실질소비지출은 연평균 1.6% 증가하였는데, 이는 모두 2017년의 소비지출이 급등한 결과이다.

9) 비소비지출이 정상소득을 초과하여 가처분소득이 음(-)인 가구가 일부(연중 11~23가구 수준) 존재하였는데 이들을 제외한 분석결과도 아래 보고될 내용과 다르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10) 「가금복」은 소득, 소비 등 유량항목에 대해서는 조사시점 기준 전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즉 N년도 가금복조사의 경우 (N-1)년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 2012년 조사결과는 2011년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였다.

[표 1] 기초 통계량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령	52.6 (14.5)	53.5 (14.4)	54.5 (14.4)	55.5 (14.4)	56.4 (14.3)	57.3 (14.3)
가구원수	2.8 (1.3)	2.8 (1.3)	2.8 (1.3)	2.8 (1.3)	2.8 (1.3)	2.7 (1.3)
소득 (10,000원)	3,369.7 (3,028.3)	3,472.3 (3,231.0)	3,606.7 (3,306.0)	3,673.7 (3,301.8)	3,761.5 (3,250.1)	3,922.8 (3,371.8)
소비 (10,000원)	2,186.6 (1,600.1)	2,137.9 (1,521.6)	2,102.5 (1,471.6)	2,124.8 (1,504.3)	2,122.3 (1,490.1)	2,359.2 (1,675.3)

주 : ‘연령’은 가구주의 연령, ‘소득’은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 ‘소비’는 가구의 실질소비이다. 소득과 소비의 실질화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였다. 모든 수치는 연도별 표본평균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이다.

(2) 조사표 변경 후 ‘기타 소비지출’ 답변 변화

이러한 소비지출의 증가가 2017년의 조사표 변경과 관련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 23(2017년 이후는 설문 24)으로 조사된 전체 소비지출을 ‘기타 소비지출’과 그 이외 6개 항목(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가금북」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기타 소비지출’이 아닌 6개 항목의 소비지출을 포괄하여 ‘일반 소비지출’로 지칭하도록 한다.¹¹⁾ 먼저 6개 세부항목의 지출추이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에 정리된 결과를 보면 조사표 변경 이전과 이후 항상 조사항목이 명시되어 있었던 6개 소비지출의 경우 조사표 변경 이전과 이후 주목되는 변동은 발견되지 않는다.

[표 2] 일반 소비지출 세부항목 추이

(단위 : 10,000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식료품	642.4	615.2	612.1	633.4	638.9	668.3
주거비	291.7	296.7	295.7	292.7	288.8	288.7
교육비	343.5	310.5	302.6	295.4	297.1	301.2
의료비	136.7	142.6	149.9	161.1	157.9	169.2
교통비	267.6	267.5	260.3	254.4	244.0	247.8
통신비	160.5	168.6	166.3	166.9	164.1	161.9

주 : 각 소비지출 세부항목은 연도별 표본평균이며 실질화되었다.

11) 또 2016년 이전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조비’는 제외하였다.

이제 [표 3]에는 전체 소비지출, 그리고 이를 ‘일반 소비지출’과 ‘기타 소비지출’로 구분한 추이를 정리하였다. 정리된 결과를 보면 표본가구의 평균 ‘일반 소비지출’의 경우 전체 표본 기간인 2012~2017년 중 1,800만원 내외에서 등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도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기타 소비지출’은 조사표 변경 이전인 2016년까지는 평균 320~340만원 수준에서 변동하다가 2017년 522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57.5%에 달하는 급등이었다.

2017년 ‘기타 소비지출’의 급등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그림 3]은 ‘기타 소비지출’의 추이를 ‘전체 소비지출’ 대비 비중으로 도식한 것이다.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기타 소비지출’의 비중은 2012~2016년 기간 15%대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2017년 22.1%로 상승하였다.

[표 3] 기타 소비지출 추이

(단위 : 10,000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소비지출	2,186.6 (1,600.1)	2,137.9 (1,521.6)	2,102.5 (1,471.6)	2,124.8 (1,504.3)	2,122.3 (1,490.1)	2,359.2 (1,675.3)
일반 소비지출	1,842.3 (1,322.4)	1,801.1 (1,273.0)	1,786.9 (1,236.8)	1,803.9 (1,258.9)	1,790.8 (1,242.2)	1,837.2 (1,280.0)
기타 소비지출	344.4 (524.8)	336.9 (428.4)	315.6 (395.2)	320.9 (395.5)	331.5 (385.5)	522.1 (578.0)

주 : ‘기타 소비지출’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의 23번 문항(2017년 이후는 24번 문항)의 기타소비지출이다. ‘일반 소비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기타 소비지출을 제외한 수치이다. 모든 수치는 연도별 표본평균이며 실질화되었다.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이다.

[그림 3] 전체 소비지출 대비 기타 소비지출 비중 추이



특별히 표본대상 가구의 소비선호가 2017년에 달라질 이유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변동은 조사표 변경이 초래한 이례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 소비지출’의 경우 6개 항목 어디에서도 특이한 변동이 없었으므로, 조사항목 중 ‘기타 소비지출’에 유일한 변동이었다고 판단된다. 2017년 조사표 변경 후 ‘기타 소비지출’의 증가가 과연 이례적 현상이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12년~2016년과 2017년, 두 그룹으로 나누어 t-test를 수행하였다. t-test결과 ‘일반 소비지출’의 경우 두 그룹 사이에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1% 유의수준에서 두 그룹의 평균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¹²⁾

[표 4] 조사표 변경전과 후의 소비지출 평균 비교: t-test

	2012~2016 평균(A)	2017년 평균 (B)	t_값 (귀무가설 A=B)	p_값
기타 소비지출	329.9	522.1	-21.1	0.00
일반 소비지출	1,805.0	1,837.2	-1.3	0.20

(3) 조사표 변경 후 ‘가구간 이전 지출’ 답변 변화

2017년 조사표 변경에서 시각 주목도가 강화된 ‘기타 소비지출’이 이전과 달리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면, 반대로 시각 주목도가 약화된 ‘경조비’의 조사결과는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 ‘경조비’의 경우 2017년 이후에는 ‘가구간 이전지출’에 포괄되어 답변하도록 되었으므로 2012~2016 기간의 경우 ‘가구간 이전지출’에 ‘경조비’를 합한 금액을 2017년 새로운 조사표에 의한 ‘가구간 이전지출’과 비교하였다. 즉 2017년 기준에 의한 ‘가구간 이전지출’금액을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계산하여 비교하는 방식이다.

[표 5]는 2017년 기준에 의한 ‘가구간 이전지출’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간 이전지출’은 2012~2016년이 비해 2017년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의 통계적 유의성을 t-test로 점검한 결과가 [표 6]에 정리되어 있는데, 1% 유의수준에서 조사표 변경 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12) ‘일반 소비지출’의 6개 세부항목에 대해 t-test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어느 항목에서도 2017년 조사표 변경 후 평균에 유의한 변동이 있었다는 결과는 얻어지지 않았다.

[표 5] 가구간 이전지출 추이

(단위: 10,000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90.1	232.3	215.3	211.7	203.0	109.8
(297.4)	(997.7)	(350.6)	(309.6)	(301.0)	(259.1)

주 : 본 표의 '가구간 이전지출'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의 22-3번 문항과 23-7번 문항의 합을 의미한다.(2017년 이후는 23-3번 단독 문항). 모든 수치는 연도별 표본평균이며 실질화되었다.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이다.

[표 6] 가구간 이전지출 조사표 변경전과 후의 평균 비교: t-test

	2012~2016 평균(A)	2017년 평균 (B)	t_값 (귀무가설 A=B)	p_값
가구간 이전지출	210.5	109.8	10.3	0.00

주 : 가구간 이전지출에 대한 정의는 "[표 5] 가구간 이전지출 추이"의 "주" 참조

(4) 「가계동향조사」와의 비교

2017년 조사표 변경에 따라 기타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한 현상이 「가금복」을 활용한 여러 연구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예시하기 위해 정책설계에서 통계청에 의해 공식 소비 관련 지표로서 발표되어 온 '평균소비성향'에 대한 시사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소비성향은 「가계동향조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평균소비성향 계산과 같은 방법을 「가금복」 자료에 적용하여 평균소비성향을 구하여 보았다.¹³⁾ 비교시 주의할 점은 가금복의 경우 N년도 조사는 (N-1)년도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므로 평균소비성향에 대한 N년도 「가금복」 결과 값은 N-1년도 가계동향조사 결과 값에 대응시켜 비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가금복」에서 계산된 평균소비성향(전체 소비지출/가처분소득)을 2인 이상 가구와 전체가구에 대해 구하여 [그림 4]에 도시하였다.¹⁴⁾¹⁵⁾

13) 이하에서의 「가금복」 평균소비성향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와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해 3,033가구 표본이 아닌 해당연도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별 가중치도 고려하여 계산되었다. 3,033가구표본에 한정하여 평균소비성향을 계산할 경우에도 본문의 논지는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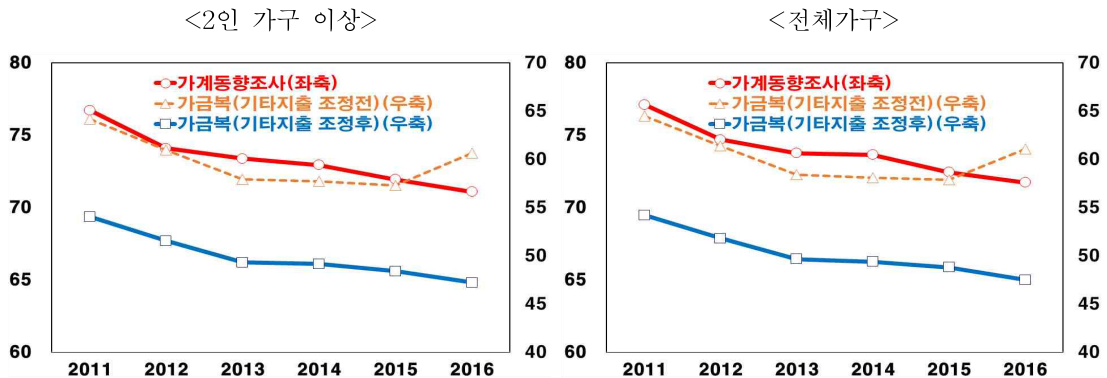
14) 소비지출과 가처분소득은 앞서와 동일하게 경소비 항목을 소비지출에서 비소비지출로 조정된 기준으로 재계산하였다.

15) 통계청은 평균소비성향을 2인 가구 기준과 전체 가구 기준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중 2인 가구 기준 평균소비성향을 공식지표로 공표하여 왔다. 이에 맞추기 위하여 「가금복」 자

[그림 4]를 살펴보면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평균소비성향은 2011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가 2016년중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동향조사」의 평균 소비성향(굵은 실선)이 2016년에도 계속하여 하락세를 유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2017년 「가금복」 조사표 변경으로 ‘기타 소비지출’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기타 소비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평균소비성향을 산출한 결과(얇은 실선)는 비록 수준은 다르지만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소비성향 추이와 유사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17년 조사표 변경 전후 「가금복」 조사에서 ‘기타 소비지출’ 항목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변동은 조사자료를 활용한 경제학적 해석에서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림 4] 기타 소비지출 조정 전후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주 : 이 그림은 각각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하여 계산한 평균소비성향을 도시한 것이다.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소비성향이 가구별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모두 가구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계산되었다.

Ⅲ. 회귀 분석

1. 조사표 변경으로 인한 답변변동의 추정식

Ⅱ장의 분석은 2017년 조사표변경 전후 가계의 ‘기타 소비지출’ 답변에 유의한 변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조사금액의 유의한 변동 자체가 조사표 변경으로 가계의 답변 행태가 변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이 변동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표변경이 가계의 답변행태에 변화를 가져와 ‘기타 소비지출’ 조사금액이 최종적으로 변동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타 소비지출’의 계량모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가계소비에 대한 실증연구를 따라 ‘기타 소비지출’이 표준적인 생애주기(Life cycle) 모형에서 도출되는 소비관계식에 의해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¹⁶⁾

$$\ln(C) = \beta_0 + \beta_1 \ln(Y) + \beta_2' \cdot Z + \varepsilon \quad (1)$$

식(1)에서 $\ln(\cdot)$ 은 로그변환 변수를 뜻하고, C 는 기타 소비지출, Y 는 소득이다. Z 는 가구의 인구특성 변수 벡터로서 로그변환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및 연령의 제곱이다. ε 은 확률오차이다. 식(1)은 일반적인 소비관계식인데, 이제 유의할 점은 식(1)의 계수 $(\beta_0, \beta_1, \beta_2')$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가금복」으로 수집된 관측치들이고, 이 관측치 중 기타 소비지출 C 는 2017년 조사표 변경에 따라 조사금액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즉 조사표 환경을 표시하는 변수로 θ 를 도입하면, 식(1)에서 관측치 C 는 θ 의 함수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면 식(1)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ln(C(\theta)) = \beta_0(\theta) + \beta_1(\theta) \ln(Y) + \beta_2'(\theta) \cdot Z + \eta \quad (2)$$

식(2)에서 η 는 확률오차이다. 식(2)는 조사표 환경 변화로 가계의 ‘기타 소비지출’ 답변이 달라지면 이 답변변화는 계수 $(\beta_0, \beta_1, \beta_2')$ 의 변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알려준다. 즉 2017년 이전의 조사표 환경을 θ_0 , 2017년 변경후의 조사표 환경을 θ_1 으로 표시하면, 조사표 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답변의 변동(D)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begin{aligned} D \equiv \ln(C(\theta_1)) - \ln(C(\theta_0)) &= (\beta_0(\theta_1) - \beta_0(\theta_0)) + (\beta_1(\theta_1) - \beta_1(\theta_0)) \ln(Y) \\ &+ (\beta_2'(\theta_1) - \beta_2'(\theta_0)) \cdot Z + (\varepsilon - \eta) \end{aligned} \quad (3)$$

이제 조사표 변경이 가계의 답변행태 변화를 가져와 최종적으로 기타 소비지출(C) 관측치의 유의한 변동을 야기하였는지의 여부는 식(3)에 의한 가계답변의 변동(D)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검증할 수 있다.

16) Attanasio and Weber (1994, 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더불어 식(3)은 만일 유의한 변동이 있었다고 하면, 그 변동이 어떤 요소와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beta_1(\theta_1) - \beta_1(\theta_0)$ 이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된다면 조사표 변경이 소득이 높은 가구의 답변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또 $\beta'_2(\theta_1) - \beta'_2(\theta_0)$ 의 추정치가 유의하다면 조사표 변경이 연령대 또는 가구원수에 따라 가계의 답변행태에 다른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가 된다. 마지막으로 $\beta_0(\theta_1) - \beta_0(\theta_0)$ 의 추정치가 유의하다면 가구 고정특성요인들이 가계의 답변행태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뜻한다.

만일 조사표 환경이 θ_0 에서 θ_1 으로 달라지기 이전과 이후 동일 시점의 기타 소비지출(C), 소득(Y), 인구특성(Z) 조사치가 존재한다면 식(3)의 추정은 통상적인 회귀분석 방법으로 즉시 가능하다. 그러나 식(3)의 추정에서 문제는 조사표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기타 소비지출의 동일 시점 관측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동일연도에 대한 $C(\theta_1)$, $C(\theta_0)$ 는 존재할 수가 없다. 2012~16년에 대해서는 θ_0 하의 관측치, 2017년에 대해서는 θ_1 하의 관측치만이 존재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에 대해 조사표 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 답변의 변동(D_{2017})의 추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한다. 식에서 $\ln(\widehat{C_{2017}}(\theta_0))$ 는 2012~2016년의 자료를 이용한 식(2)의 계수추정치에 2017년 소득, 인구특성 변수치를 대입하여 얻은 값으로 정의한다.

$$\widehat{D_{2017}} \equiv \ln(C_{2017}(\theta_1)) - \ln(\widehat{C_{2017}}(\theta_0)) \quad (4)$$

식(4)는 조사표 변경에 따른 가계 답변의 변동(D_{2017})의 추정치를 제공할 뿐이므로, 식(3)의 계수 ($\beta_0, \beta_1, \beta'_2$) 중 어느 계수가 변동의 주요 요인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주요 변동요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식(6)에서 추정치 $\widehat{D_{2017}}$ 를 2017년 조사치 소득(Y)과 인구특성변수(Z) 등에 회귀분석하도록 한다.

한편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가계의 고정특성요인이다. 식(2), (3)에서 β_0 는 개별가구의 고정효과(fixed effect)이다. 주지하듯이 개별가구 고정효과는 개별가구의 고정특성요인의 소비지출(C)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변수이다. 포함되는 고정특성요인은 표본기간 변화가 없는 개별가구의 모든 특성요인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고정특성요인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가금복」의 경우 그러한 고정특성요인으로 조사되는 항목으로는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종사상 지위)이 있다. 조사표 변경으로 가계의 답변행태가 변화되는데 있어서는 가구주의 학력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β_0 에 대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면 조사표 변경에 따른 가계 답변행태 변화의 원인에 대한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소득(Y), 인구특성변수(Z)에 더하여 가구주

학력과 직업을 $\widehat{D}_{2017}$ 의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분석하도록 한다.

2. 추정결과

먼저 아래 [표 7]은 2012~2016년 기간 3,033 가구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식 (1)을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회귀방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생애주기 소비이론과 기존 실증분석에 의하면 가계의 소비지출은 연령에 대해 역U자의 모양을 보이며, 소득과 가구원수와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를 들어 Attanasio and Weber (1995) 등 참조). [표 7]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참여한 가계의 기타지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2012~2016년 패널자료 추정결과

$$\ln(C) = 0.303 \times \ln(Y) + 0.041 \times Age - 0.000 \times Age^2 + 0.211 \times \ln(Family)$$

(0.02) (0.02) (0.00) (0.06)

주 : $\ln(C)$ 는 실질 기타 소비지출의 로그값, $\ln(Y)$ 는 실질 가처분소득의 로그값, Age 는 가구주의 연령, $\ln(Family)$ 는 가구원수의 로그값이다. 괄호안은 표준오차이다. 추정은 고정효과 패널추정에 의하였다.

다음으로 [표 7]에 얻어진 계수 추정치를 활용하여 $\ln(\widehat{C}_{2017}(\theta_0))$ 의 추정치를 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widehat{D}_{2017} \equiv \ln(\widehat{C}_{2017}(\theta_1)) - \ln(\widehat{C}_{2017}(\theta_0))$ 을 구하였다. $\widehat{D}_{2017}$ 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평균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t-test 결과를 [표 8]에 정리하였다. [표 8]을 살펴보면 기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들인 소득, 인구특성 등을 감안한 상태에서도 $\widehat{D}_{2017}$ 이 0이라는 가설은 쉽게 기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표 변경 후 ‘기타 소비지출’ 담변의 변동은 기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들의 변동에 의해 설명될 수 없으며, 담변 행태의 변동에 기인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표 8] 소비관계식 추정에 의한 조사표 변경전후 기타 소비지출 비교: t-test

	평균(A)	표준편차	t_값 (귀무가설 A=0)	p_값
$\widehat{D}_{2017}$	0.5023	0.0150	33.56	0.00

마지막으로 $\widehat{D}_{2017}$ 을 가구의 소득, 인구특성변수, 그리고 개별가구 고정특성에 회귀추정하였다. 이 추정결과를 [표 9]에 정리하였다. 회귀분석은 모두 세 가지 유형의 모형설

정에 의하였다. (모형 1)은 기준모형으로서 소득, 연령 및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한 추정이다. (모형 2)와 (모형 3)은 기준모형에 각각 학력더미와 직업더미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이다.

먼저 기준모형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조사표 변경에 의한 답변변동은 가구의 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령과 가구원수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수항이 유의하였다. 상수항은 개별가구의 고정특성요인에 따라 조사표 변경이 가져온 답변변동이 유의하게 달랐음을 뜻한다. (모형 2)는 여러 고정특성요인 중 가구주 학력이 가구의 답변변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학력 더미를 추가하였을 때, 학력 더미의 계수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형 3)은 가구의 고정특성요인 중 가구주 직업이 답변변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함인데, 상용직 더미가 조사표 변경에 따른 답변변동과 유의

[표 9] 조사표 변경에 따른 답변변동의 회귀 추정결과

	모형 (1) (기준모형)	모형 (2) (학력더미 포함)	모형 (3) (직업더미 포함)
Age	-0.001 (0.00)	-0.000 (0.00)	0.001 (0.00)
ln(Y)	0.074 *** (0.03)	0.069 ** (0.03)	0.054 * (0.03)
ln(Family)	0.038 (0.04)	0.034 (0.04)	
<학력/직업>			
초등학력(일용직)		0.052 (0.09)	0.027 (0.06)
중등학력(자영업)		0.137 (0.10)	0.088 * (0.05)
고등학력(상용직)		0.117 (0.09)	0.132 *** (0.05)
대학학력 이상		0.082 (0.10)	- -
상수항	0.253 *** (0.13)	0.159 (0.15)	0.172 (0.13)
R^2	0.010	0.011	0.012

주 : 종속변수는 $\widehat{D}_{2017} = \ln(C_{2017}(\theta_1)) - \ln(C_{2017}(\theta_0))$ 이다. Age는 가구주 연령, $\ln(Y)$ 는 가구주 소득의 로그값, $\ln(Family)$ 는 가구원수의 로그값이다. 모형 (2)에서 상수항은 ‘미취학’ 더미, 모형 (3)에서 상수항은 ‘무직 및 기타직업’ 더미에 해당한다. 단, 모형 (2)에서 ‘대학학력 이상’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뜻한다. 모형 (2)와 (3)의 추정은 통상최소자승추정법(OLS)에 의하였다.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뜻한다. 괄호안은 표준오차이다.

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업자 더미는 약한 유의성을 보였다. (모형 3)의 추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가구주 직업더미를 추가하여 추정하였을 때, 소득의 통계적 유의성이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직업 더미와 소득이 상호 상관되어 있고, 직업 더미가 소득의 대용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종합하면 2017년 조사표 변경에 따른 가계답변 변동의 결정요인으로서 유의한 것은 소득이었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IV. 해 석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조사표 변경은 가구의 '기타 소비지출' 답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을 가져왔다. 2012~2016년의 조사금액에 비하여 2017년의 조사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증가는 소비지출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 연령, 가구원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증가액은 가구특성 중 소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표 변경에 따른 답변금액의 증가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유의하게 컸다. 그 이외 가구주의 학력은 별 다른 유의성이 없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2017년 조사표 변경은 조사표의 내용, 즉 조사표가 담고 있는 정보에는 아무런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다. 유일한 변화는 조사표의 시각적 주목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제주체들의 답변행태에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존 경제학의 이론 중 시각적 주목도의 변화가 경제주체의 행태에 변화를 가져온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제한된 주의력(limited attention)' 또는 '부주의(inattention)'이론이 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의 합리적 정보처리능력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전제해 왔지만, 최근 들어 '휴리스틱(heuristic)' 정보처리방법¹⁷⁾을 가정하여 경제주체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행태적인 정보처리방법 중에서도 학계에서 최근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제한된 주의력(limited attention)'인데, 이 흐름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정보처리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않는다. 주어진 정보 중에서 시각적으로 현저하게(salient) 부각된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

17) 개인의 의사결정이 휴리스틱 정보처리방법에 의존한다는 주장은 본래 심리학에서 유래하였으나, 다양한 휴리스틱 사례에 관한 심리학계의 소개서로는 Gilovich, Griffin, and Kahneman (2002)를 참조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한 경제학계의 관련 연구에 대한 리뷰로는 DellaVigna (2009)가 있다.

령지 못한 정보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e.g., Chetty, Looney and Kroft, 2009; DellaVigna, 2009; Finkelstein 2009; Lacetera, Pope and Sydnor, 2012).

조사표 변경이 경제주체들의 답변행태 변화를 야기한 사건을 ‘현저성’ 개념에 의해 설명할 때, 답변변동이 학력 특성과 유의성이 없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된다. 경제주체의 정보처리방식이 합리적이지 않고 ‘휴리스틱’ 특성을 보인다는 명제는, 이 정보처리방식이 경제주체의 태생적 특성이고 사후적으로 ‘합리성’의 방향으로 개선 또는 진화되기 어려움을 내포한다. 이는 경제주체의 비합리적인 ‘휴리스틱’정보처리방식은 교육에 의해 교정되지 않아야 함을 함축하는 것이다. 교육 등에 의해 경제주체의 합리성이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휴리스틱’정보처리방법이 모든 경제주체의 행태를 지배한다는 명제는 성립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조사표 변경에 따른 답변행태의 변화가 소득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고소득 가구의 기타 소비지출이 유형으로 다양하고 금액으로도 많은 가운데, 조사표 변경 이전 무시되었던 지출항목이 변경 후 파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사표 변경 이전 ‘오락·문화’로 포괄 제시되었던 것이 변경 후 ‘운동·공연·단체여행비·취미용품(TV, 오디오, 컴퓨터, 사진기 등)’으로 각 세부지출 항목의 ‘현저성’이 높아지게 되자, 변경 이전 답변가게가 간과하였던 세부지출이 변경 후 파악되게 되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표 변경 이전 ‘공연’에 대한 지출이 간과되었다고 할 때, 이 지출금액이 고소득 가구에서 컸다면 얻어진 실증결과가 설명된다.

V. 결 론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7년 조사표 변경이 조사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을 가져왔음을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은 이 같은 변동에 대해 ‘제한적 주의력’과 ‘현저성’이라는 행태경제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가설적 해석을 제시해 보았다. 이제 본 논문이 담고 있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시사점 및 한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본 논문은 설문에 의한 미시가계자료 수집에 있어 조사표 설계가 조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사목적에 맞추어 조사표 설계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조사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이전과 이후 조사결과의 변동을 분석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

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가계동향조사」의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바 있었는데, 이때 주로 문제로 거론되었던 것은 조사대상 표본의 변동이었다.¹⁸⁾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분석기간 계속하여 존속한 동일가계이므로 조사대상 표본의 변동문제는 없었다. 그럼에도 자칫 작은 변화로 간주될 수 있는 조사표 변경이 큰 조사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작성의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작은 변화라 하여도 초래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조사결과의 변동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조사표 변경이 초래한 조사결과의 변동에 대해 행태경제학적 설명을 제안한 본 논문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그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입장에서 조사표 작성을 통해 얻는 효용은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도덕적 의무감 이외에 실질적인 경제적 편익이 있는 활동은 아니다. 그러므로 가계금융복지 조사에서 가계가 보여준 행태가 합리적 경제주체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하여도, 이 결과를 그대로 가계의 일반 경제활동에서의 의사결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요컨대 본 논문의 분석은 실질적인 경제적 편익이 미미한 의사결정에서 가계가 ‘제한된 주의력’, ‘현저성’이 적용되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실증한 것이다. 행태적 의사결정이 가계의 일반 소비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여부는 다른 연구과제이다.

18) 관련하여 무수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통계청장 경질 부른 가계동향조사 뭐가 문제됐나”(한겨레 기사(2018.8.30))

참 고 문 헌

- 김대용 · 서정원, 2020,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20년 2월호, 16-39.
- Attanasio, Orazio P. and Guglielmo Weber, 1994, The UK consumption boom of the late 1980s: aggregate implications of microeconomic evidence, *Economic Journal* 104, 1269-1302.
- _____, 1995, Is consumption growth consistent with intertemporal optimization? Evidence from the consumer expenditure surve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 1121-57.
- _____, 2009, Booms and busts: Consumption, house prices and expectations, *Economica* 76, 20-50.
- Chetty, Raj, Adam Looney, and Kory Kroft, 2009, Salience and taxation: Theory and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9, 1145-77.
- DellaVigna, Stefano, 2009, Psychology and economics: Evidence from the fiel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7, 315-72.
- Finkelstein, Amy, 2009, E-ztax: Tax salience and tax rat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 969-1010.
- Gilovich, Thomas, Dale Griffin, and Daniel Kahneman, 2002, *Heuristics and biases: The psychology of intuitive judg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cetera Nicola, Devin G. Pope, and Justin R. Sydnor, 2012, Heuristic thinking and limited attention in the ca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102, 2206-36.

Abstract

Revision in the Questionnaire of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 and Living Conditions in 2017

– A Natural Experiment of ‘Limited Attention’ –

Inseok Shin* · Min Han**

A seemingly simple revision was made in 2017 for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FLC)” in its questionnaire. The revision was about how to present the questionnaire rather than what to include. Apparently, the revision resulted in a more salient questionnaire with respect to expenditures on ‘others’. The seemingly simple revision took a substantial impact on the responses of households. This paper examines this event with the two folded purposes. First, this study aims at reporting the fact th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occurred in the SFLC dataset after the revision of the questionnaire in 2017. Second,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n explanation relying on behavioural approaches as the traditional rational agent-based approach is at odds with the phenomenon. This paper interprets the event as an example illustrating that households are subject to the constraint of ‘limited attention’. In particular, their capacity of processing or attending to information is influenced by how the information is presented: ‘salience’ matters.

Key words: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Limited Attention, Salience

JEL Classification: D1, D9, E2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e-mail: ishin@cau.ac.kr

** Main Author, Senior Economist, Financial Markets Department, Bank of Korea,
e-mail: zll77@bok.or.kr